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2-42호

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의3(과태료의 징수유예 등)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2년 6월 7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 :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2. 6. 7. ~ 6. 21.(15일)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이덕재	1963. 01. 14.	0178220274100001463 0178220274100001461	₩16,616,000	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43라길
2	황미자	1958. 12. 05.	0178220274100001459	₩2,050,000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
3	신동혁	1989. 12. 14.	0178220274100001470 0178210274100002900	₩7,905,000	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18 번길
4	심지은	1972. 09. 27.	0178220274100001466 0178200274100010675	₩3,862,500	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 12길

4. 문의처 :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
(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, ☎ 02-6735-8139, 8140, 8142)
5. 공고내용 :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 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 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

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
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